## KOSHA GUIDE

C - 59 - 2022

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지붕형태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사항

## 6.1 평탄한 지붕

- (1) "평탄한 지붕"이라 함은 경사각이 10° 미만인 지붕을 말한다.
- (2) 지붕 단부에서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지붕의 바닥 개구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붕 모서리 또는 깨지기 쉬운 부분에 지붕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2 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출입금지 표시판이나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6.2 경사진 지붕

- (1) "경사진 지붕"이라 함은 경사각이 10° 이상인 지붕을 말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경사진 지붕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작업 중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그림 6>과 같이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구조물(8.0 KN 이상 충격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및 고정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